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4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정성국·박수영·이인선

곽규택 • 이헌승 • 조경태

김용태 · 조정훈 · 서천호

김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·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.

그런데 후보자의 국내·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 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.

이에, 후보자가 국내·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,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·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5 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6항(종전의 제15항) 중 "서류의 공개방법"을 "서류의 공개방법, 국내·외 학력의 조사 의뢰절차,"로 한다.

(5)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4항제6호에 따른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(한글번역문 포함)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·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단체는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⑭	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⑭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⑤</u>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
	는 후보자가 제4항제6호에 따
	른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
	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
	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
	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
	(한글번역문 포함)를 제출한 때
	에는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
	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 이 경
	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
	는 국내·외 학력을 검증할 수
	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
	의뢰할 수 있으며, 조사를 의뢰
	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학력의
	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관
	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
	보하여야 한다.
⑤ 候補者의 登錄申請書와 推	<u> </u>
薦書의 서식, 세금납부 및 체납	<u> </u>
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, 제출·	
	서류의 곳개밧법 국
회보받은 <u>서류의 공개방법</u> 그	<u>서류의 공개방법, 국</u>

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 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. 내·외 학력의 조사 의뢰절차,-